

## ●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-189호

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5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#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특허권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인하하며, 평균감면을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등이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4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에 대한 50%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을 촉진(안 제7조제2항제9의3호)
- 나. 「특허법(법률 제16208호(2019. 1. 8.)로 일부개정된 법률)」 제139조의2 등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을 면제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절차와 관련된 권익 보호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 (안 제7조의3)
- 다. 영어로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조사료를 인하하고, 개발도상국 출원인에 대한 국제조사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건에 대한 국내단계 심사청구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(안 제10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)
- 라.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한편,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특허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특허권자 등의 특허증 활용 편의를 제고(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)
- 마. 평균감면을 계산 및 적용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수수료 납부 부담을 경감(안 제7조제6항)
- 바.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권리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무료화로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자의 자진 말소 등록을 유도(안 제2조제2항제6호, 제3조제2항제6호,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)
- 사.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 등 행정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 제1항)
- 아. 행정정보공동이용망(G4C)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(안 별지 제3호서식)
- 자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(교부→발급) 및 관련 서식 개정(안 제8조제8항 등 및 별지 제1호의2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 : 정보고객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(우편번호 35208)
- 전자우편: [hanao@korea.kr](mailto:hanao@korea.kr)
- 팩스: 042-472-3460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(전화 042-481-5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